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鎭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

윤경진**

1. 머리말
2. 고려의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의 확장
 - 1) 三撒·禿魯兀 개척과 伊板嶺
 - 2) 海陽(吉州) 진출과 영토의식의 확장
3. 고려말 영토의식과 公嶮鎭 두만강북설
 - 1) 鐵嶺衛 설치 문제와 공험진
 - 2) 東女眞의 귀부와 공험진 두만강북설의 출현
 - 3) 공험진 두만강북설의 형성 근거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계승의식에 기반하여 북방 영토의 개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거란과의 전쟁을 협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압록강을 국경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고려는 강동 6주의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압록강 너머의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는 과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고려는 국경에 長城을 쌓아 방어를 강화함과 아울러 새로 확보된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였다.

이후 고려의 관심은 동북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장성 이북의 여진 부락을 적극 회유하여 고려의 지배권 안에 넣고자 하였다. 문종대에는 이 지역에 집중

* 이 연구는 2018년도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적으로 羈糜州를 설치하여 고려의 藩屏으로 삼았다.¹⁾ 그러나 고려의 기미주 체제는 여진 完顏部 세력의 성장과 남하로 인해 동요하였다. 고려는 이에 무력 정벌을 통해 기미주 지역을 영토로 확보하고자 하였다.²⁾

숙종 9년(1104)의 여진 정벌이 실패한 후 군사력을 증강한 고려는 예종 2년(1107) 대대적인 여진 정벌을 단행하고 東北 9城을 쌓았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9성을 철거하고 그 땅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결국 동북 9성 개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고려 및 조선의 영토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는 공민왕 5년(1356) 元에 몰입되었던 雙城總管府를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장성 이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 작업은 고려말에 吉州 지역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조선 세종 때 두만강변의 6鎭을 개척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동북 9성 개척은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과거 고구려가 지배했던 사적을 내세우며 고려에게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경험은 고려말의 영토 개척 과정에서 다시 환기되었다. 고려는 동북 9성을 근거로 이 지역이 고려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윤관이 개척한 범위에 그대로 고려의 영유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조선초기의 영토 개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³⁾

- 1) 고려의 女眞에 대한 羈糜州 편제 및 藩屏 설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李根花, 1988 「고려 前期의 女眞招諭政策」, 『白山學報』 35;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 43; 송용덕, 2005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鎭城編制」, 『韓國史論(서울대 국사학과)』 51; 宋容德, 2012 「고려의 一字名 羈糜州 편제와 尹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신수정, 2013 「고려 문종대 女眞의 동향과 고려 영토」, 『崇實史學』 30.
- 2) 고려의 여진 정벌과 그 배경에 대한 주요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金庠基, 1959 「여진관계의 시말과 윤관(尹瓘)의 북정」, 『國史上的 諸問題』 4(1974 『東方史論叢』, 서울大學校出版部); 羅滿洙, 1983 「高麗前期의 對女眞政策과 尹瓘의 北征」, 『軍史』 7; 金南奎, 1997 「高麗 睿宗代의 對女眞政策: 睿宗 2年 對女眞戰의 原因에 대한 考察을 중심으로」, 『慶大史論』 10; 金塘澤, 2000 「高麗 肅宗·睿宗代의 女眞征伐」, 『東아시아 歷史의 還流』, 知識產業社; 秋明燁, 2001 「11세기 후반-12세기 초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韓國史論(서울대 국사학과)』 45; 송용덕, 2011 「1107-1109년 고려의 葛懶甸 지역 축성과 '尹瓘 9城' 인식」, 『韓國史學報』 43; 김순자, 2012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말 영토 개척과 이에 수반된 영토의식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당시 영토 개척의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함과 아울러 그 前史로서 동북 9성의 실제적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조선초기로 이어지는 영토 개척의 추이와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⁴⁾

이 때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당시 개척 과정에서 동북 9성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公嶮鎭을 매개로 표현되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윤관은 처음 6성을 개척한 후 공협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은 것으로 되어 있다.⁵⁾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공협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설이 소개되어 있다(이하 ‘두만강북설’로 약칭함).

하지만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관련 기사的高증을 통해 두만강북설이 성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척 범위가 길주를 상한으로 한다고 보았다(이하 ‘길주이남설’로 약칭함). 일제시기 일본학자들은 동북 9성을 함흥평야에 비정하면서(이하 ‘함흥평야설’로 약칭함) 두만강북설을 허구로 일축하였다. 이후 함흥평야설이 정설로 자리잡았으나 1970년대 이후 한국학계에서는 두만강북설을 수용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다시 부각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나왔다. 곧 동북 9성의 경계는 길주이고 공협진은 길주 이남에 있었다는 실학자들의 견해를 재확인하고, 공협진 立碑 사적은 6성 개척 때 林彦이 지은 『英州廳壁上記』에서 고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高句麗 古碑’를 토대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⁶⁾

3) 조선시대 동북 9성 인식의 전반적인 추이에 대해서는 이정신, 2012 『고려·조선시대 윤관 9성 인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32 참조.

4) 고려말 영토 개척에 대한 연구는 원에 몰입되었던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 이후 전개된 개척 과정은 주로 조선전기까지 이어진 영토 확장의 맥락에서 개괄되었다. 이 때문에 영토 개척의 명분이 된 동북 9성과의 관계성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저간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김순자, 2003 『고려의 북방경영과 영토정책』 『韓中關係史 研究의 成果와 課題』, 國史編纂委員會; 吳宗祿, 2003 『朝鮮前期의 北方經營과 疆域』 위의 책.

5) 『高麗史』 권12, 睿宗 3년 2월 戊申 “尹瓘以平定女眞 新築六城 奉表稱賀 立碑于公嶮鎭 以爲界至”

이처럼 공협진 입비를 후대에 생성된 사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공협진의 위치를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명시한 설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⁷⁾ 이것은 해당 지역이 고려 내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의 역사적 근거로 제시된 것이며, 당시에 진행된 영토 개척 및 여진 부락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고려 공민왕대 이후 東北面에서 진행된 영토 개척의 추이를 영토의식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협진 두만강북설이 생성된 맥락을 해명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고려말 영토 개척의 추이와 그와 연계된 영토의식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고려는 장성 이북으로 진출하면서 伊板嶺을 경계로 그 남쪽의 哈蘭(함흥)과 三撒(북청)을 중심으로 개척지를 인식하였다. 그 뒤 이 관령을 넘어 海陽(길주)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자 영토의식도 더 북쪽으로 확장되었는데,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두만강북설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에 대해 추적할 것이다. 공협진은 쌍성총관부 지역에 대해 明이 鐵嶺衛 설치를 통보하자 고려가 이에 맞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공양왕대 韓都里와 兀良哈의 來附 기사에 다시 등장하면서 북방 영토의식의 준거로 채용되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공협진 시작이 여진 招諭와 연동된 영토의식의 표현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6) 윤경진, 2016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鎮 立碑' 문제」 『歷史와實學』 61.

7) 오종록은 조선초기 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두만강북설에 대해서는 여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명과 대립하던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나온 허언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 관계성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다(吳宗祿, 2003 앞의 논문, 114면).

2. 고려의 東北面 영토 개척과 영토의식의 확장

1) 三撒·禿魯兀 개척과 伊板嶺

고려는 공민왕 5년(1356) 원의 지배하에 있던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이 본래 고려의 舊地라는 명분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종 45년(1258) 趙暉·卓靑의 반란과 투항으로 和州 일대가 몽골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고려는 원의 지배권에서 이탈하면서 가장 먼저 영토의 수복을 꾀하였다.

그런데 실제 고려가 확보한 지역은 장성 이남의 화주 일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고려는 장성을 넘어 三撒(三散)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고려의 수복 지역은 장성 이남과 이북으로 구분되는데, 雙城과 三撒이 각각 그 중심이 되었다.

쌍성 수복 후 공민왕이 원에 보낸 表文에는 당시에 개척한 영토에 대한 인식이 제시되어 있다.

쌍성과 삼살은 본래 小邦의 영토인데 先臣 忠憲王(고종) 戊午年에 조휘·탁청 등이 죄를 짓고 처형될 것을 두려워하여 여진을 끌어들여 우리의 예기치 않은 상황을 틈타 관리를 죽이고 남녀를 끌고 가 모두 노비로 삼았습니다. (중략) 바라건대 우리 옛 영토[舊疆]를 돌려주시고, 쌍성과 삼살 이북에 關防 설립을 허락해 주십시오.⁸⁾

위 표문은 고려의 영토 개척을 舊地 수복으로 정당화하며 원의 공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쌍성은 고려가 조휘의 반란으로 상실한 화주 일대를 나타내고, 삼살은 장성 이북 일원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고려가 당초 군현이 설치되어 있던 쌍성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려의 영토 밖에 있던 삼살 지역에 대해서도 “본래 고려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고려 주민들이 삼살 지역까지 이주한 사정도 생각할 수 있고,⁹⁾ 한편으로 원의 지배 속에 국경의 의미가 약화

8) 『高麗史』 권39, 恭愍王 5년 10월 戊午 “雙城三撒 元是小邦之境 先臣忠憲王戊午 趙暉卓靑等 犯罪懼誅 誘致女眞 乘我不虞 殺戮官吏 繫累男女 皆爲奴婢 (중략) 伏乞歸我舊疆 雙城三撒以北 許立關防”

9) 쌍성 이북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이를 매개로 한 고려의 영토의식에 대해서는 김순자, 2006 『고려, 원(元)의 영토정책, 인구정책 연구』 『역사와현실』 60 참조.

된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앞서 동북 9성을 설치했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다.

그런데 고려는 쌍성과 더불어 삼살도 조위의 반란으로 몰입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북 9성의 경험이 영토의식의 직접적인 준거로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장성 이복을 쌍성과 묶어 인식함으로써 영유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갓 영토를 수복한 고려로서는 오래 전의 사적인 동북 9성을 내세우는 것보다 東寧府 등이 원에 몰입되었다가 반환된 경험이 우선했던 것이다.

이듬해 都堂이 行省에 보낸 글에는 고려의 동북방 영토에 대해 좀더 구체화된 인식이 보인다.

쌍성과 삼살 등처를 살펴보니 본래 본국의 地面으로, 북쪽으로는 伊板嶺을 경계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關防을 잃어버린 탓에 여진인 무리가 州縣의 관리를 모두 죽이고 땅과 인민을 차지하고 멋대로 採金戶計라고 자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和州가 쌍성으로 이름이 바뀌는 데 이르러 摠管府와 千戶所를 두니 그 자손이 또 본국에서 역을 피하는 民吏들을 피어들여 官私를 아울러 몰아넣어 점유하고 사사로이 부리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중략) 그 땅이 본래 험하고 궁벽한 곳이라 본국에서 죄를 짓고 망명하는 무리가 때때로 경계를 넘어 숨어들어 바로 어리석은 백성과 결탁하여 일을 일으킵니다. 만약 伊板의 좁은 입구에 관방을 설치하여 출입을 삼가게 한다면 후환이 없을 듯합니다.¹⁰⁾

위에서도 고려는 쌍성과 삼살 지역이 본래 고려의 영토임을 말하고 있다. 다만 그 경계를 이판령(마천령)으로 명시하였다. 이것은 앞 기사에서 고려가 삼살 이복에 관방의 설치를 제시한 것과 연결된다.

이판령은 단주(단천)의 동쪽, 길주의 서쪽에 있으며,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이판령을 경계로 언급한 것은 쌍성 수복 후 실제 고려가 영토로 확보한 지역이 이판령, 곧 단주 일대까지였기 때문이다.¹¹⁾

10) 『高麗史』 권39, 恭愍王 6년 8월 戊午 “照得雙城三撒等處 元是本國地面 北至伊板爲界 在先 因失關防 致被女真人衆盡殺州縣官吏 就得地土人民 擅自稱爲採金戶計 及將和州 更名雙城 設置摠管府千戶所 其子孫 又行召誘本國避役民吏 并官私逃驅 影占私役 無有紀極 (중략) 其地 本是險阻深僻 以致本國負罪亡命之徒 往往越境閃藏 卽與愚民 交構生事 若於伊板隘口 設置關防 以謹出入 庶無後患”

이관령에 바로 인접한 단주는 『고려사』 지리지에 우왕 8년(1382) 端州安撫使 설치가 첫 연혁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는 안무사 파견 자료를 통해 연혁을 정리한 것일 뿐, 그 때 비로소 단주 지역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려는 공민왕대에 이미 단주 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¹²⁾ 다음 기사에는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때에 이르러 왕이 柳仁雨가 머뭇거린다는 것을 듣고 桓祖에게 小府尹의 직책을 주고 兵馬判官 丁臣桂를 보내 환조에게 內應할 것을 설득하였다. 환조가 명을 듣고 바로 조용히 나아가 유인우와 군대를 합쳐 쌍성총관부를 공파하였다. 趙小生과 卓都卿이 처자를 버리고 이관령 북쪽 立石 땅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지도를 살펴 和州·登州·定州·長州·預州·高州·文州·宜州와 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 등의 鎭을 수복하였다. 대개 咸州 이북의 哈蘭·洪獻·三撒의 땅은 본래 우리 영토였으나 조희 등이 반란을 일으켜 元에 몰입된 것이 무릇 99년이었는데 지금 모두 수복하였다. 정신계가 군대를 이끌고 伊板을 지나 여진과 싸워 크게 이기고 그 괴수 帖木兒를 참하고 머리를 서울로 보냈다. 유인우가 처음 이르렀을 때 단주 이북 천 수백 리가 휩쓸리듯 南向했는데, 유인우가 재물을 탐내 살육하였다.¹³⁾

위의 기사는 쌍성총관부 탈환 과정에 대해 이성계의 아버지인 桓祖(李子春)가 참여한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사에서도 장성 이북의 哈蘭·洪

11) 고려말 이성계가 올린 헌의에는 공민왕 때 영토를 청주(북청)까지 개척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3월 甲辰 “臣於丙申六月 陪先父臣某 受命玄陵 平雙城 復舊疆 憑藉餘力 拓土至青州 以爲藩鎭 使無東顧之憂”). 그런데 이것은 장성 이남을 쌍성으로 대표하듯이 장성 이북의 영토 개척을 삼살(북청)로 대표 인식한 결과이며, 실제 북청까지만 진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2) 윤경진, 2015 『고려후기 東北面의 지방제도 변화: 州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2, 357-358면.

13) 『高麗史』 권111, 列傳24 趙暉 “至是 王聞仁雨逗遛 授桓祖小府尹 遣兵馬判官丁臣桂 諭桓祖內應. 桓祖聞命 卽銜枚就行 與仁雨合兵 攻破雙城總管府 小生都卿 棄妻子 逃入伊板嶺北立石之地 於是 按地圖 收復和登定長預高文宜州及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等鎭 盖咸州以北哈蘭洪獻三撒之地 本爲我疆 自暉等叛沒于元 凡九十九年 今皆復之 臣桂領兵過伊板 與女眞戰大捷 斬其魁帖木兒 傳首于京 仁雨之初至也 端州以北千數百里 靡然南向 仁雨貪財殺戮” 이 기사에는 수복 지역으로 登州와 宜州도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쌍성총관부 설치 후 추가로 몰입된 지역으로 충렬왕 때 반환되었다. 위 기사는 이러한 사적을 통틀어 정리한 것이다(윤경진, 위의 논문, 339-340면).

獻·三撒이 본래 고려의 영토인데 조위의 반란으로 상실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판령 내지 단주를 하나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자춘이 참여한 고려군의 공격으로 조소생 등이 이판령 북쪽으로 도주했다는 것은 고려가 이판령까지 접수했음을 반영한다. 정신계가 이판령을 넘어 첩목아를 침살했다는 것도 이러한 경계 인식을 준거로 한다.

그리고 덧붙인 설명에서 유인우가 처음 이르렀을 때 “단주 이북이 南向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주 이남은 고려의 지배에 들어왔고, 그 이북도 고려의 지배에 들어올 수 있었으나 유인우의 잘못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평가인 것이다.¹⁴⁾ 고려는 처음에 거점이었던 함란과 삼살을 접수한 데 이어 이판령까지 진출하면서 이곳을 경계로 표방했던 것이다.

한편 전술한 도당의 글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내용은 바로 伊板의 좁은 입구에 關防을 설치하여 통로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진의 왕래와 침구를 막는 의미와 동시에 이곳까지 고려의 영토로 확정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원의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경계 확정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 구도는 예종 때의 여진 정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원정 기사를 보면, 원정 배경으로 伊位 경계 상에 있는 瓶項을 막으면 狄人の 길이 차단될 것이라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¹⁵⁾ 여기서 伊位와 伊板은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곳은 여진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길목이자 고려의 북방 경계를 설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의미는 고려 말에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¹⁶⁾

이렇게 고려가 장성을 넘어 영토를 개척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 경험에 대한 인식도 환기되었다. 다음 두 기록은 이러한 양상을 시사한다.

14) 단주 이북 ‘천 수백 리’가 南向했다고 한 것은 동북 9성의 경계로 알려져 있던 공협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설과 관련된다. 이 설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15)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伊位界上 有連山 自東海岸崛起 至我北鄙 險絕荒翳 人馬不得度 間有一徑 俗謂瓶項 言其出入一穴而已 邀功者 往往獻議 塞其徑 則狄人路絕 請出師平之”

16) 다만 예종 때에는 길주 방면까지 경략했기 때문에 실제 경계는 길주에 형성되었다. 당시 고려는 해로를 이용하여 길주 방면을 경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이판령을 목표로 남북 양 방향에서 경략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고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 ① 壽春君 李壽山을 東北面都巡問使로 삼아 여진의 강역을 정하였다.¹⁷⁾
- ② 중원과 본국의 지도를 편찬했는데, 개벽 이래 제왕이 興廢하고 강역이 離合한 자취를 서술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옛 것을 좋아하는 박식한 군자가 이것을 보면 가슴 사이가 하나의 天地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왕에게 바치니 왕이 보고 가상히 여겼다.¹⁸⁾

①은 공민왕 11년(1362) 기사로서 여진의 강역을 정했다는 것은 역으로 고려의 강역 범위가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려가 이판령까지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한 것의 연장에서 그에 인접한 여진 부락에 대한 편제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는 공민왕대 후반 羅興儒가 편찬한 지도에 대한 기사이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앞 기사로 그가 影殿都監에서 활동한 내용이 나와 魯國公主 영전의 건설이 시작되는 공민왕 15년(1366) 이후로 판단할 수 있다. 그가 편찬한 지도는 중국과 고려를 아울렀는데, 흥미로운 것은 “강역의 離合” 사적에 대해 서술했다는 사실이다. 공민왕대 진행된 영토 개척이 그러한 인식과 서술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가슴 사이가 천지가 된다”는 표현은 고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준다.

결국 고려는 장성 이북으로 개척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이 고려의 고유 영토임을 표방하였다. 다만 쌍성 지역과 묶어 조휘의 반란으로 몰입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울 뿐, 동북 9성을 직접적인 준거로 채용하지는 않았다.¹⁹⁾ 그보다는 동녕부 등의 반환 경험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동북 9성이 전면에 표방되는 데에는 이를 유도한 여건의 변화가 상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7) 『高麗史』 권40, 恭愍王3 11년 12월 癸未 “以壽春君李壽山 爲東北面都巡問使 定女眞疆域”

18) 『高麗史』 권114, 列傳27 羅興儒 “撰中原及本國地圖 敘開闢以來 帝王興廢 疆理離合之迹 曰 好古博雅君子覽之 胸臆間一天地也 遂進于王 王見而嘉之”

19) 도당의 글에는 관방을 잃어버려 여진이 점거한 단계와 화주가 쌍성으로 바뀌는 단계가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후자는 쌍성총관부 설치를 말하는 바, 앞선 관방의 상실은 동북 9성의 환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한 권역의 시기별 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성 이남을 준거로 이북의 사적까지 묶어 이해함을 의미한다.

2) 海陽(吉州) 진출과 영토의식의 확장

쌍성을 수복하고 이관령을 경계로 설정한 뒤에도 고려는 영토 개척을 지속하면서 길주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고려는 원 간섭기에 이미 길주 방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유입된 인구의 推刷도 도모하였다.

약관이 되지 않아 충숙왕을 섬겼다. 당시 吏民이 여진의 洪肯과 三撒, 禿魯兀, 海陽 등지에 흘러 들어갔는데, 왕이 趙噉을 보내 해양에 이르러 60여 호를 추쇄하였다. 돌아와 監門衛郎將에 제수되었는데, 뒤에 다시 해양에 이르러 100여 호를 추쇄하여 돌아왔다.²⁰⁾

위 기록은 조휘의 손자인 趙噉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그는 충숙왕 때 쌍성 이북 지역의 고려 주민을 추쇄하는 데 공을 세웠다. 당시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홍궁·삼살·독로울·해양이 언급되었다. 홍궁은 함주 인근의 洪獻으로 조선초기에 洪原縣이 설치되는 곳이다. 삼살은 북청, 독로울은 단주, 해양은 길주이다.

여기서 조돈의 활동이 이관령을 넘어 길주까지 미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예종 때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은 범위와 일치한다. 추쇄 대상은 당시 유입된 인구가 모여 살던 곳을 열거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관령 너머까지 관심을 가진 데에는 해당 지역이 고려의 고유 영토라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은 충렬왕 16년(1290) 哈丹의 침입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金忻와 羅裕, 鄭守琪 등이 哈丹이 海陽 지경에 들어왔다고 급히 보고하였다.²¹⁾

위에서 합단은 원에 반기를 들었던 乃顔의 휘하에 있던 장수로서 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정부군에 패배한 후 두만강을 건너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는 여러 장수를 동북방 주요 지역에 주둔시켜 대비하였다.²²⁾

20) 『高麗史』 권111, 列傳24 趙噉 “未弱冠 事忠肅王 時吏民逋入女眞洪肯三撒禿魯兀海陽等地 王遣噉至海陽 刷六十餘戶 還授監門衛郎將 後復至海陽 刷百餘戶來”

21) 『高麗史』 권30, 忠烈王 16년 5월 戊申 “金忻羅裕鄭守琪等 馳報哈丹入海陽界”

22) 『高麗史』 권30, 忠烈王 16년 2월 乙亥 “遣中軍萬戶鄭守琪屯禁忌山洞 左軍萬戶朴之亮屯伊川 韓希愈屯雙城 右軍萬戶金忻屯參巖 羅裕屯通川 以備丹賊”

그 뒤 합단의 침입에 대한 첫 보고의 내용이 바로 해양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려가 해양 방면까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토의식을 직접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방면까지 관심 범위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충숙왕 때 조돈이 해양까지 가서 유민을 추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려가 쌍성을 수복한 직후인 공민왕 7년(1358)에는 해양의 토호가 내투하였다.

조소생과 탁도경이 해양으로 도망가 짐거하니 해양 사람 完者不花가 군사 1,800인을 거느리고 내투하였다.²³⁾

고려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자 당시 쌍성을 장악하고 있던 조소생 등이 도주하였고, 고려는 장성 이남을 수복할 수 있었다.²⁴⁾ 당시 도주한 조소생 등은 해양으로 가서 세력을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해양의 토착 세력이 고려에 내투하는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는 해양 지역에 대한 정보 확보와 더불어 이곳을 장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에 자리잡은 조소생은 고려의 변경을 위협하였다. 그는 요동에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納哈出을 끌어들여 이관령 이남의 삼살과 忽面 땅을 침구하였다.²⁵⁾ 이에 대응하여 고려는 해양에 대한 압박을 높여갔고, 공민왕 20년(1371)을 전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게 되었다.

海陽萬戶 弓大 및 鎮邊元帥 達麻大가 사신을 보내 正朝를 하례하였다.²⁶⁾

위에서 海陽萬戶는 해당 지역의 토호에게 부여한 직함으로 파악된다. 그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正朝를 하례한 것은 이곳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음을 반영한다.

23) 『高麗史』 권39, 恭愍王 7년 5월 甲辰 “趙小生卓都卿 逃據海陽 海陽人完者不花 率兵千八百人 來投”

24) 『高麗史』 권39, 恭愍王 5년 7월 丁亥.

25) 『高麗史』 권40, 恭愍王 11년 2월 己卯 “趙小生誘引納哈出 入寇三撒忽面之地 元季兵燹 胡虜納哈出 據有瀋陽之地 稱行省丞相”

26) 『高麗史』 권43, 恭愍王 20년 12월 丁未 “海陽萬戶弓大及鎮邊元帥達麻大 遣使賀正”

특히 달마대는 前年에 고려에 땅을 바치며 귀부하였다.

여진 達麻大가 사신을 보내 땅을 바치니[獻地] 달마대를 大將軍 鎮邊都護府使로 삼고 옷을 내려주었다.²⁷⁾

위에서 달마대가 고려에 “땅을 바쳤다”고 한 부분은 여진 지역이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고려는 그에게 鎮邊都護府使라는 직함을 주어 현지의 통치 책임을 맡겼다. 그런데 곧이어 고려는 張子溫을 鎮邊都護府安撫使로 임명하였고,²⁸⁾ 달마대는 元帥府元帥가 되었다.²⁹⁾ 이는 고려의 행정적 지배를 수립하면서 달마대에게는 기존 군사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그의 사례에 비추어 함께 온 해양만호 궁대 또한 비슷한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그 또한 같은 해에 방물을 바치며 부락 100호를 正陵에 속하도록 요청한 바 있어³¹⁾ 달마대의 ‘獻地’와 유사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공민왕 21년(1372)에도 사신을 보내 생신을 축하하였다.³²⁾

우왕 7년(1381)에는 해양만호 土音不花가 사람을 보내 매를 바친 기사가 확인된다.³³⁾ 그리고 이듬해에는 해양만호 金同不花가 아들을 質子로 보냈다.³⁴⁾ 금동 불화는 윤2월 관할 주민과 함께 내투하였고, 고려는 그를 독로울, 곧 단주 지역에 살게 하였다.³⁵⁾

우왕 9년(1383)에는 遼瀋의 草賊 40여 기가 단주를 침략하자 단주상만호 陸麗, 청주상만호 黃希碩 등이 西州衛·해양까지 추격하여 물리쳤다.³⁶⁾ 같은 해 이

27) 『高麗史』 권42, 恭愍王 19년 11월 乙巳 “女眞達麻大 遣使獻地 以達麻大 爲大將軍鎮邊都護府使 賜衣”

28) 『高麗史』 권42, 恭愍王 19년 11월 丙辰 “以禮部尙書張子溫 爲鎮邊都護府安撫使”

29) 『高麗史』 권42, 恭愍王 19년 12월 戊寅 “以達麻大爲元帥府元帥 賜銀印一顆”

30) 달마대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양과 함께 언급되는 것과 獻地和 安撫使 과전 등을 고려하면 甲州 방면으로 추정할 수 있다.

31) 『高麗史』 권42, 恭愍王 19년 5월 戊申 “女眞萬戶弓大 獻方物 以部落一百戶 請隸正陵”

32) 『高麗史』 권43, 恭愍王 21년 5월 戊申 “鎮邊元帥達麻大 女眞萬戶弓大 遣使賀誕辰”

33)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禡 7년 11월 “海陽萬戶土音不花 遣人獻鷹 禡悅”

34)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禡 8년 2월 “海陽萬戶金同不花 遣其子夫耶介 爲質”

35)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禡 8년 윤2월 “金同不花 以所管人民 來投 處之禿魯兀之地”

성계는 길주에서 胡拔都를 격퇴하였다.³⁷⁾ 이러한 상황은 당시 길주 방면에 대해 고려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왕 9년 이성계가 올린 安邊策에는 당시 개척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전투의 승패는 地利의 得失에 달려 있습니다. 저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 우리 西北과 가까운데도 버리고 도모하지 않으니 이에 많은 이익으로 멀리 우리 품 邑草·甲州·海陽의 백성을 꺾어 데려갑니다. 그리고 端州 秃魯兀 땅에 돌입하여 人物을 잡아가지도 합니다.³⁸⁾

위의 기사를 보면 단주 방면과 길주 방면은 사정이 다소 달랐다. 지배가 확립되어 군현이 설치된 단주 지역과 달리 갑주와 해양은 지배력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여 주민이 여진으로 유인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갑주와 더불어 해양을 고려의 영토로 인식하고 주민을 백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확립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자연 주민 안정을 위해 군현 설치와 같은 직접 지배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공양왕대 들어 실현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연혁에 따르면 공양왕 2년(1390) 길주에 萬戶府가 설치되었고, 이듬해에는 갑주에도 만호부가 설치되었다. 우왕 후반부터 갑주와 길주 방면에 지배력을 높여가던 고려는 공양왕대 들어 만호부 설치를 통해 자신의 영토로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⁹⁾

36)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禡 9년 7월 “遼瀋草賊四十餘騎 侵掠端州 端州萬戶陸麗 靑州萬戶黃希碩 千戶李豆蘭等 追至西州衛海陽等處 斬渠魁六人 餘皆遁去”

37)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禡 9년 8월 “我太祖 大破胡拔都于吉州”

38)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禡 9년 8월 “且兵之勝否 在於地利之得失 彼兵所據 近我西北 舍而不圖 乃以重利 遠啗我吾邑草甲州海陽之民 以誘致之 今又突入端州秃魯兀之地 驅掠人物”

39) 당시 고려가 길주와 갑주(갑산) 방면으로 각각 영토 확장을 추진한 것은 동북 9성 개척의 연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곧 고려는 이판령 방면의 경략을 통해 길주까지 확보하는 한편, 영주(북청)를 거점으로 내륙 방면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6성 개척 후 추가로 설치된 宜州와 平戎鎭 등은 바로 갑산 방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윤경진, 2016 앞의 논문, 27-29면). 고려말 失地 회복의 관점에서 갑산 방면으로의 진출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는 우왕대 중반 해양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당초 이관령을 경계로 영토의식을 표방하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 지역까지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관령을 경계로 삼아 관방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며, 자신의 영토가 이관령을 넘어 길주 방면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내세우게 되었다. 고려가 동북 9성의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따른 것으로, 明의 鐵嶺衛 설치 통보를 계기로 전면화되었다.

3. 고려말 영토의식과 公嶮鎭 두만강복설

1) 鐵嶺衛 설치 문제와 공험진

고려는 공민왕대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면서 장성 이북으로 영토 개척을 진행하였고, 원과의 관계 속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곳이 본래 고려의 영토임을 내세웠다. 이것은 예종 때 동북 9성을 개척한 경험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전면에 표방되지는 않았다. 대신 장성 이남과 묶어 조위의 반란 때 함께 몰입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고려는 처음에 이관령을 영토 범위로 설정했으나 이관령 이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영토의식도 더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영토의식이 전에 비해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전기가 된 것은 바로 明의 鐵嶺衛 설치 통보였다.⁴⁰⁾

우왕 14년(1388) 명에 사신으로 다녀온 偈長壽는 철령위 설치에 대한 명 태조의 지침을 전달하였다.

40) 鐵嶺衛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池內宏, 1918 「高麗辛禡朝に於ける鐵嶺問題」, 『東洋學報』 8-1; 稻葉岩吉, 1934 「鐵嶺衛の位置を疑ふ」, 『靑丘學叢』 18; 末松保和, 1941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史學論叢』 2; 金龍德, 1961 「鐵嶺衛考」, 『中央大論文集』 6; 朴元焄, 2006 「鐵嶺衛 位置에 관한 再考」, 『東北亞歷史論叢』 13; 朴元焄, 2007 「鐵嶺衛 설치에 대한 새로운 觀點」, 『韓國史研究』 136.

철령 이북은 원래 元朝에 속했으니 아울러 요동에 귀속시킨다. 나머지 開元·瀋陽·信州 등처의 軍民은 本業에 돌아가는 것을 들어준다.⁴¹⁾

위의 통보는 곧 원의 쌍성총관부 관할에 있던 지역을 그대로 명의 영토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요동 진출을 본격화한 명은 각지에 衛를 설치해 나갔는데, 철령위는 이 해 12월에 설치되었다.

당시 조치에 대해 『明太祖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戶部에 명하여 고려왕에게 咨文을 보내기를, “철령 북쪽과 동쪽·서쪽의 땅은 전에 開原(開元)에 속했는데, 그곳의 토착 軍民과 여진·달단·고려인들은 요동에서 통할한다. 철령의 남쪽은 전에 고려에 속했으므로 인민은 모두 본국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영토와 경계가 정해진 뒤 각기 지키는 바에 안착하고 다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⁴²⁾

위에서 철령 이북이 開元에 속했다는 것은 元代 쌍성총관부가 開元路에 속했던 것을 말한다. 명 태조는 이 지역에 있는 군민을 모두 遼東都司가 통할하게 하고, 그 남쪽은 그대로 고려에 귀속시킨다는 지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철령을 기준으로 명과 고려의 경계를 획정한다는 뜻이다.⁴³⁾

여기서 남방 경계로 제시되는 ‘철령’은 함경남도 안변과 강원도 회양 사이에 있는 鐵嶺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⁴⁾ 그러나 이곳은 원의 영토와 무관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하한으로 철령위 관할 범위를 설정했을 가능성은 없다. 조휘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골에 투항한 후 설치된 쌍성총관부의 하한은 文州(문천)였다. 그 남부에 있는 宜州(덕원)와 登州(안변)도 일시 쌍성총관부 관할에

41)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禡 14년 2월 “鐵嶺迤北 元屬元朝 並令歸之遼東 其餘開元瀋陽信州等處軍民 聽從復業”

42) 『明太祖實錄』 권187, 洪武 20년 12월 壬申 “命戶部咨高麗王 以鐵嶺北東西之地 舊屬開原其土著軍民女真韃靼高麗人等 遼東統之 鐵嶺之南 舊屬高麗 人民悉聽本國管屬 疆境既正 各安其守 不得復有所侵越”

43) 鐵嶺衛 치소의 위치는 논란이 있으나 현재 요동의 奉集縣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 설치 목적도 영토보다는 인구의 확보에 초점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원호, 2007 앞의 논문 참조.

44) 박원호, 위의 논문, 111면.

들어갔으나 곧바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바 “元에 속해 있던 철령이 북”의 경계는 문천과 덕원 사이에 있는 鐵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⁵⁾

고려는 명의 일방적 통보에 반발하면서 朴宜中을 보내 철령위 설치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고려는 해당 지역이 자신의 영토라는 근거로 이전의 역사적 경험을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살피보건대 철령 이북으로 文州·高州·和州·定州·咸州 등을 거쳐 公嶮嶺에 이르기까지 본래 본국의 땅에 속했는데, 遼 乾統 7년에 이르러 동여진 등이 作亂하여 함주 이북의 땅을 점거하자 睿王이 遼에 고하여 토벌을 청하고 병사를 보내 수복하고 함주 및 공협진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중략) 지금 받들어 보건대 철령 이북과 이동·이서가 원래 開元에 속하여 관할 軍民을 그대로 요동에 속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여기서 철령의 산은 王京에서 거리가 300리에 불과하고 공협진을 변경의 경계로 삼은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⁴⁶⁾

위에서 고려의 영토는 문주로부터 함주를 거쳐 공협진에 이르는 ‘철령 이북’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문주로서 이로부터 북쪽으로 주진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주가 쌍성총관부 관할 지역의 남단이었으며, 그 경계가 된 철령이 문천과 덕원 사이의 철관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의 북방 경계로서 공협진을 언급하고 있다. 예종대의 동북 9성 개척을 준거로 자신의 영토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앞서 쌍성과 묶어 조휘의 반란으로 몰입되었다고 한 것과 달라진 양상이다. 그리고 경계 지표로서 공협진이 지목되었다. 이는 고려가 처음 6성을 건설한 뒤 “공협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는 『고려사』 기사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고려말에 공협진을 동북 9성 및 그에 근거한 고려 영토의 경계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종 때 개척 범위를 제시한 『英州廳壁上記』나 국왕에게 올린 表文에

45) 윤경진, 2015 앞의 논문, 11면, 주 24).

46)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禡 14년 2월 “切照鐵嶺池北 歷文高和定咸等諸州 以至公嶮嶺 自來係是本國之地 至遼乾統七年 有東女真等作亂 奪據咸州池北之地 睿王告遼請討 遣兵克復 就築咸州及公嶮嶺等城 (중략) 今欽見奉鐵嶺池北池東池西 元屬開元 所管軍民 仍屬遼東 欽此 鐵嶺之山 距王京 僅三百里 公嶮之嶺 限邊界 非一二年”

는 공험진 입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려가 개척한 영토의 북방 한계는 吉州였고, 공험진은 그보다 후방에 있었다. 따라서 공험진 입비는 실재한 일이 아니라 후대에 생성된 인식으로 보아야 한다.

공험진 입비 사적은 당초 임언의 기문에서 해당 지역이 고려의 고유 영토임을 내세우기 위해 언급된 ‘高句麗 古碑’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고려는 6성 개척 범위 안에 있던 古碑를 고구려의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곳이 본래 고구려 땅임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렇게 영토 지표로서 의미를 획득한 고비는 이 지역이 다시 여진 땅으로 들어간 후 9성 개척 때 윤관이 세운 비로 해석되었고, 한편으로 비가 있던 공험진이 영토의 경계라는 인식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⁴⁷⁾ 이것이 명의 칠령위 설치 통보를 계기로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계 지표로서 공험진 입비 사적이 형성되는 배경 내지 맥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공민왕 5년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장성 이북으로 영토를 개척해 나갈 때 고려는 이 지역이 쌍성과 함께 몰입된 고려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쌍성총관부 설치 이후 장성 지역과 그 이북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된 것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곧 쌍성 지역이 본래 고려의 땅임을 준거로 그와 묶여 운영되던 장성 이북까지 고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이 칠령위 설치를 통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명은 원이 지배했던 지역이 모두 명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쌍성 지역이 고려의 지배 밖에 있던 장성 이북 지역과 묶이면서 고려의 영토에서 이탈할 우려가 커졌다.

따라서 고려는 더 적극적으로 장성 이북 또한 원의 지배 이전에 고려의 영토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에는 보다 분명한 근거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고려의 영토가 되었던 경험으로서 동북 9성의 사적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동북 9성 개척에는 여진이 점거한 옛 땅을 되찾는다는 명분이 있었고, 9성의 설치와 주민 이주라는 실체적 사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동북 9성의 범위인가 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고려가 확보할 수 있는 영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쌍성 수복 때 내세

47) 윤경진, 2016 앞의 논문.

운 이관령이나 동북 9성의 북단이었던 길주가 아니라 공협진 사적을 채용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공협진이 동북 9성 개척 당시에 고구려 영토임을 입증하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임언의 기문에서 지목한 고구려 고비는 마운령비로 추정되며, 이 비가 있던 곳이 바로 공협진으로 파악된다. 임언이 이 비를 이용하여 고구려 구지임을 주장한 것처럼, 고려는 다시 이 비를 고려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공협진에 있던 고구려 고비”는 다시 “공협진에 세워 경계를 표시한 비”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공협진의 명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협진은 9성 철거 기사에 등장하지 않아 그 이전에 먼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말에 공협진은 후속 연혁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것은 시각에 따라 공협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고려는 상황에 따라 공협진의 위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영토가 확장되면 공협진의 위치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협진비’의 사적은 그것을 유도한 실물로서 ‘윤관비’, 곧 마운령비와 분리되어 관념적인 경계 지표로 활용될 수 있었다.⁴⁹⁾

48) 고려말 영토 개척과 함께 설치되는 州府 중에는 동북 9성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咸州와 吉州는 그 명칭이 동일한 경우이다. 端州는 명칭이 다름에도 福州과 연결되고 있어 근거 자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윤경진, 2016 앞의 논문, 182면). 함주와 길주의 경우도 단순히 명칭만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英州와 雄州는 이후 연혁이 나타나지 않으나 조선 태종 때 각각 參撒(北靑)과 洪肯(洪原)에 비정되기도 하였다[『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5월 19일(己未) “由是女眞人民 雜處其間 各以方言 名其所居 吉州稱海陽 端州稱禿魯兀 英州稱三散 雄州稱洪肯 咸州稱哈蘭”]. 영주를 북청에 비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응주는 길주와 함께 이관령 북쪽에 있었으므로 홍원에 비정한 것은 오류로 판단된다. 다만 조선초기에 처음 축성된 6성에 대해 일정하게 위치 비정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 공협진은 그러한 비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사적 자체가 인멸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추가 축성된 宜州의 경우 『고려사』 지리지에 宜州(덕원) 연혁에 들어갔는데, 이는 명칭이 같아서 생긴 편집 오류이다. 당시 의주의 명칭은 湧州였다(윤경진, 위의 논문, 178면).

49) 고려말 詩文 중에는 북방 인식의 지표로 ‘尹瓘碑’를 언급한 사례가 여럿 보여 이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牧隱詩稿』 권4, 送梁判官赴朔方兵馬使幕次韻 “爲問尹碑今在否”; 『牧隱詩稿』 권4, 送東北面韓萬戶得月字 “秋草蕭蕭埋尹碣”; 『東文

이것은 조선초기 동북면의 영토 개척과 행정 편제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공협진의 위치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난다. 하나는 慶源都護府 연혁에 이곳이 본래 公嶮鎭防禦使였다고 나오는 것이다. 곧 예전에 孔州 또는 匡州로 칭해지던 곳이며, 예종 때 공협진방어사를 두었는데 태조 때 경원도호부로 승격했다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축성 과정에서 '匡州防禦之印'이 새겨진 인장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덧붙여 놓았다.⁵⁰⁾ 유물과 공협진 사적을 이용하여 두만강변의 경원도호부가 앞서 고려의 영토였음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두만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영유권의 근거로 공협진 사적을 이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물론 고려말에 공협진을 경계로 설정한 인식의 연장에 있다.⁵¹⁾

그런데 咸吉道 연혁과 경원도호부 四境 항목에는 공협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설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이 두만강을 넘어 개척을 진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수립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처음 경원도호부를 설치할 때에는 공협진 사적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확보했

選』 권16. 次安邊官舍韻(鄭樞) “尹相碑成一代雄”. 그런데 정추는 충숙왕 2년(1333)에 태어나 우왕 8년(1382)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윤관비’ 사적은 그의 사망 이전에 이미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민왕대 쌍성총관부 수복 이후 동북 9성을 배경으로 한 영토 개척 과정에서 기존에 고구려 고비로 파악되었던 마운령비가 윤관이 세운 비로 새롭게 인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것이 ‘공협진비’로 지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시문의 비는 실제 마운령비를 통해 실물적으로 인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위치 미상의 공협진과 연계된 입비 사적과는 층위가 다르다. 공협진이 경계로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판령 남쪽에 있는 비는 ‘윤관비’로 지칭되며 동북 9성 사적을 표상할 수는 있지만 경계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었다. 이에 ‘윤관비’와 ‘공협진비’가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철령위 설치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계 지표로서 공협진 내지 공협진비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전기가 되었다.

50) 『世宗實錄』 地理志 咸吉道 慶源都護府 “古孔州 或稱匡州 久爲胡人所據 高麗大將尹瓘逐胡人 置公險鎭防禦使 本朝太祖戊寅 以有德陵安陵 陞爲慶源都護府 修城掘地 得印一顆 其文曰匡州防禦之印”

51) 稻葉君山은 후대에 영토 관념의 발전에 따라 동북 9성의 개척이 상징화되고 공협진이 한층 북진하여 두만강 이북에 설치되기에 이르렀다고 이해하였다(稻葉君山, 1926 『朝鮮國境の史的考察(1-5)』, 『朝鮮史學』 3-7, 朝鮮史學同攷會: 권영국, 2014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인식』 『史學研究』 115, 74면에서 재인용).

는데, 뒤이어 두만강 너머로 영토의식이 확장되면서 공협진도 두만강 북쪽에 비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공협진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북상하는 것은 당초 공협진 사적이 명의 첩령위 설치에 대응하여 고려의 영토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조선 태종 4년(1404) 명에 보낸 咨文에서 고려말의 첩령위 설치 문제를 논하면서 공협진에서 공주와 길주를 거쳐 함주에 이르기까지 본국의 소유임을 전제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의 여진을 조선이 관할하도록 요청한 것은 그 반영이다.⁵²⁾

공주는 당초 공협진과 함께 경원도호부 연혁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공협진은 여기서 분리되어 두만강 이북으로 올라갔고 공주만 경원도호부의 연혁으로 귀착되었다.⁵³⁾ 이러한 인식 변화를 담은 자료가 아울러 채록되면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공협진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세종 8년(1426)에 “혹은 공협진 이남이 나라의 옛 영토[舊封]이니 軍民을 두어 강역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⁵⁴⁾ 라고 한 기사도 조선이 동북면의 영토 범위를 공협진까지로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추가로 검토할 부분은 최종적으로 공협진의 위치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특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700리’라는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 이를 유도하는 사적이나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천착해 보기로 한다.

52)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5월 19일(己未) “本國東北地方 自公嶮鎮歷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咸州等州 俱係本國之地 至遼乾統七年 東女眞作亂 奪據咸州迤北之地 (중략) 小邦既在 同仁之內 公嶮鎮迤南 又蒙高皇帝王國有辭之旨 所據女眞遺種人民 乞令本國管轄如舊 一國幸甚”

53)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14년에 편찬된 『八道地理誌』를 수록한 것으로, 세종대 후반에 새로 개척된 4군 6진이 追錄되었다. 慶源都護府는 태조 7년에 처음 설치되었고 태종 9년에 所多老로 移設되었다가 野人의 作亂으로 다시 鏡城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첫 항목은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다. 그 뒤 세종 때 두만강변으로 이설되었고, 옛 경원도호부 자리에는 慶興都護府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경원도호부는 당초 설치된 항목과 세종 후반 6진의 하나로 移設된 항목이 따로 정리되면서 두 번 나온다. 追錄된 경원도호부 연혁에는 공협진이 빠져 있다.

54) 『世宗實錄』 권32, 世宗 8년 4월 11일(甲戌) “或謂公險以南 國之舊封 宜置軍民 以守疆域”

2) 東女眞의 귀부와 공험진 두만강북설의 출현

고려가 이관령을 넘어 길주 방면까지 경략하게 되면서 두만강변에 거주하는 여진과의 접촉이 본격화되었다. 공양왕 3년(1391) 7월 이성계는 사람을 보내 동 여진 지역의 부락들을 招諭할 것을 청하였고, 그 결과로 여진 300여 인이 귀순하였다.⁵⁵⁾ 그리고 8월에 兀良哈이 來朝하였다.⁵⁶⁾ 이것은 두만강 지역의 여진 부락 중에서 가장 먼저 내조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9월에는 前祥原郡事 李龍華를 보내 幹都里와 烏梁哈를 宣慰하게 하였다.⁵⁷⁾ 또한 내부한 알도리와 烏梁哈의 여러 추장에게 萬戶와 千戶, 百戶 등의 직책을 내려주고 內地로 옮겨 藩屏으로 삼았다.⁵⁸⁾

공양왕 4년(1392) 2월 烏梁哈와 알도리 등이 내조하면서 숙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관련 기사에 다음 내용이 들어 있다.

烏梁哈와 알도리 등이 來朝하여 숙소를 다투었다. 알도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우위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侍中 尹瓘이 우리 땅을 평정하고 비를 세우기를, ‘高麗地境’이라 했는데, 지금 경내의 인민은 모두 諸軍事(이성계)의 威信을 사모하여 온 것입니다. 비록 制軍사 집의 마구간 옆에 거처하더라도 그 후의에 감사할 것인데, 하물며 화려한 집에 어찌 東西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主上과 制軍사를 쉽게 謁고자 할 따름입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다투지 않았다.⁵⁹⁾

위의 기사는 烏梁哈와 알도리가 함께 내조하면서 爭長, 곧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다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윤관의 여진 정벌과

55)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7월 “是月 我太祖獻議 遣人齎榜文 招諭東女眞地面諸部落 於是 女眞歸順者 三百餘人”

56)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8월 乙亥 “兀良哈 來朝”

57)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9월 丙午 “遣前祥原郡事李龍華 宣慰幹都里兀良哈幹都里 卽東女眞也”

58) 『高麗史』 권46, 恭讓王 4년 3월 庚子 “幹都里兀良哈諸酋長 皆授萬戶千戶百戶等職有差 且賜米穀衣服馬匹 諸酋感泣 皆內徙爲藩屏”

59) 『高麗史』 권46, 恭讓王 4년 2월 丁丑 “兀良哈及幹都里等來朝 爭舍館 幹都里曰 吾等之來非爭長也 昔侍中尹瓘 平吾土 立碑曰 高麗地境 今境內人民 皆慕諸軍事威信而來耳 雖處以諸軍事之第馬廐之側 猶感其厚 況華屋 何有東西之異哉 第願利見主上與諸軍事耳 遂不與爭”

立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견 윤관의 개척이 알도리 지역까지 미쳤고 이곳에 비를 세워 고려의 땅임을 표시했다는 사적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단 부락 단위로 흩어져 살던 알도리가 수백년 전의 사적을 인지하고 비문의 내용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 시기에 처음 고려에 내부한 알도리 등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해 윤관의 고사를 들며 고려의 땅임을 인정한 것도 상식 밖의 상황이다.

사실 이 내용은 올랑합과 알도리의 내조를 매개로 이성계의 위세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이 『太祖實錄』總序 및 『龍飛御天歌』에도 실려 있다는 데서 뒷받침된다. 『태조실록』총서 기사는 '幹都里'가 '幹朶里'로 되어 있고 후반부 내용이 축약되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⁶⁰⁾ 『고려사』에는 이성계가 3월에 이들을 집에서 접대한 기사가 보이는데,⁶¹⁾ 『태조실록』에는 이 기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 75장은 突厥이 唐을 침구할 때 태종의 위세와 명망을 두려워하여 전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사적과 이성계의 위세에 여진이 來庭하여 爭長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태조실록』이 『용비어천가』 편찬에 맞추어 增修되었다는 사실이다. 『태조실록』의 말미를 보면, 태종 13년(1413) 河崙 등이 『태조실록』을 찬수한 것을 밝힌 데 이어 세종 30년(1448)에 鄭麟趾 등이 增修한 사실을 적었다.

『태조실록』증수가 처음 언급된 것은 세종 24년(1442)의 일이다. 당시 申概·權躔·安止 등은 『태조실록』과 『공정왕(정종)실록』, 그리고 『태종실록』에 빠진 것이 많으며 修改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⁶²⁾ 실록의 개수 작업은 세종 27년(1445) 11월 마무리되었다.⁶³⁾

60) 『太祖實錄』 권1, 總序 “兀良哈及幹朶里來朝爭長 幹朶里曰 吾等之來 非爭長也 昔侍中尹瓘平吾土 立碑曰 高麗地境 今境內人民 皆慕諸軍事威信而來耳 遂不與爭 太祖享兀良哈幹朶里於邸 以其誠服也”

61) 『高麗史』 권46, 恭讓王 4년 3월 戊子 “我太祖享幹都里兀良哈於第”

62) 『世宗實錄』 권97, 世宗 24년 9월 4일(辛酉) “春秋館監館事申概 知館事權躔 同知館事安止等啓 太祖康獻大王恭靖大王太宗恭定大王實錄 事多闕逸 請修改 從之”

그런데 『공정왕실록』의 편수관 명단은 세종 8년(1426) 8월 尹淮와 申檣이 실록을 찬진한 기사만 있고 개수와 관련된 명단은 없다. 『태조실록』 역시 세종 13년(1431) 孟思誠·尹淮·申檣 등이 찬진한 기록만 있다. 반면 『태조실록』은 개수 조치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오는 세종 27년보다 3년 뒤인 세종 30년 개수 기사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태조실록』의 경우 다시 한 번 개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태조실록』을 內殿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諺文廳에 두고 사적을 상고하여 龍飛詩를 添入하게 하였다. 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은 史官이 아니면 볼 수 없으며, 또 언문청은 알고 노출되어 外人의 출입이 무상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즉시 도로 내전에 들여오도록 명하고 春秋館 記注官 魚孝瞻과 記事官 梁誠之로 하여금 抄錄하여 바치게 하였다.⁶⁴⁾

위의 기사는 세종 28년(1446)의 것으로서 세종이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태조실록』에 추가해 넣도록 한 조치를 담고 있다. 곧 세종 27년 일차로 개수가 이루어진 후, 이듬해부터 다시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訓民正音은 세종 25년에 창제되었고, 『龍飛御天歌』는 세종 27년 4월에 찬진되었다. 여기에는 훈민정음으로 된 본문에 관련 고사가 한문으로 자세히 註記되어 있다. 세종은 『용비어천가』를 통해 정리된 창업 전 태조의 사적을 『태조실록』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 것인데, 이는 해당 사적을 확정된 역사적 사실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용비어천가』는 기본적으로 태조의 즉위 전 사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태조실록』에 첨입된 사항은 주로 총서에 들어가며, 일부 본문 중에 前史를 언급할

63) 『世宗實錄』 권97, 世宗 27년 11월 19일(庚寅) “春秋館啓 太祖實錄十五卷 恭靖王實錄六卷 太宗實錄三十六卷 今已各書四本 一本藏于本館實錄閣 三本分藏于忠州全州星州史庫 從之”

64) 『世宗實錄』 권114, 世宗 28년 11월 8일(壬申)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諺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 春秋館啓 實錄 非史官 不得見 且諺文廳淺露 外人出入無常 臣等深以謂不可 上即命還入內 令春秋館記注官魚孝瞻記事官梁誠之 抄錄以進”

때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올랑합과 알도리의 쟁장 사건도 총서에 삽입된 내용 중 하나로 판단되며, 뒤이어 『고려사』에도 채용되었다.

결국 쟁장 사건은 이성계의 위세가 여진에 강하게 미치고 있었음을 윤관의 사적을 이용하여 부각시킨 것이다. 물론 두 부락의 내조와 쟁장 사건, 이성계의 집대는 실재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후술하듯이 古碑의 존재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알도리가 윤관의 사적과 비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나 제군사의 위세로 내조했다고 말한 부분은 뒤에 구성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는 알도리와 올랑합의 내조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다른 여진 부락에 대한 초유를 도모하였다.

洪武 34년(공양왕 3) 7월 李必 등을 보내 勝文을 가지고 여진 地面의 豆萬 등처에 가서 초유했는데, 當年에 알도리와 올랑합의 만호·천호·두목 등이 바로 귀부하므로 賞賜와 名分을 시행한 다음 모두 하던 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들이 소유한 速頻·失的覓·蒙骨·改陽·實憐·八隣·安頓·押蘭·喜刺兀·兀里因·古里罕·魯別·兀的改 지면은 원래 본국의 공험진 경내에 속해 있던 곳으로 이미 초유를 행하였다. 지금까지 귀부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不順한 것이니 이에 다시 이필 등을 보내 방문을 가지고 가서 초유케 한다. 방문이 도착한 날 각각 來歸하면 賞賜와 名分 및 무릇 원하는 바를 모두 앞서 귀부한 알도리·올랑합의 예를 따를 것이다.⁶⁵⁾

위의 기사는 공양왕 4년 3월 2차 초유 당시 여진 부락에 포고한 내용으로, 아직 내부하지 않은 여진 부락의 귀부를 독촉하며 올랑합과 알도리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 홍무 24년 7월의 초유는 앞서 언급한 1차 초유를 말한 것으로, 당시 여진 300여 호가 내부하였다. 이 때 내부한 여진이 바로 올랑합과 알도리이다.

이에 고려는 아직 귀부하지 않은 여타 부락에 대해서도 초유를 진행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해당 부락들을 초유하는 준거로 이들이 “본국의 공험진 경내에 속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는 명의 철령위 설

65) 『高麗史』 권46, 恭讓王 4년 3월 “洪武二十四年七月 差李必等 齎勝文 前去女眞地面豆萬等處招諭 當年斡都里兀良哈萬戶千戶頭目等 即便歸附 已行賞賜名分 俱各復業 所有速頻 失的覓 蒙骨 改陽 實憐 八隣 安頓 押蘭 喜刺兀 兀里因 古里罕 魯別 兀的改地面 原係本國公嶮鎮境內 既已曾經招諭 至今未見歸附 於理不順 爲此再差李必等 齎勝文 前去招諭 勝文到日 各各來歸 賞賜名分 及凡所欲 一如先附斡都里兀良哈例”

치에 맞서 자신의 영토의식을 피력하였고, 여기서 공협진이 고려의 북방 경계로 제시되었다.

지속적인 영토 개척에 따라 여진 초유는 이후 영토화 과정을 전망하는 것이었기에 고려는 초유에 대해 본국 영토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공민왕 때 東寧府를 정벌하면서 箕子가 分封된 지역의 서쪽 경계가 遼河이므로 요하 이동은 고려의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⁶⁶⁾ 동북면에서는 동북 9성이 그러한 근거로 활용되었고, 공협진이 그 북쪽 경계로 지목된 것이다.

그런데 요하와 달리 공협진은 그 위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공협진의 위치에 맞추어 초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유의 진척에 맞추어 공협진의 위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유의 성과, 혹은 최종 목표점이 바로 공협진의 위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초유된 여진, 혹은 고려가 초유 대상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모두 ‘공협진 경내’로 간주되므로 공협진의 위치는 그에 맞추어 설정될 수 있다. 결국 공협진이 두만강 북쪽에 있다는 설은 여진 초유와 영토 개척에 수반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3) 공협진 두만강북설의 형성 근거

『세종실록』 지리지는 실제 입비처로 先春峴(先春嶺)을 지목하고 공협진과 함께 모두 두만강 북쪽 70리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윤관이 세운 비석에 ‘高麗之(地)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전승도 소개하였다.

巨陽에서 서쪽으로 60리 떨어진 先春峴은 곧 윤관이 비를 세운 곳이다. 그 碑의 四面에 글씨가 있었는데, 胡人이 그 글자를 깎아 없앴다. 뒤에 어떤 사람이 그 밑동을 파보았는데 “高麗之境” 네 글자가 있었다.⁶⁷⁾

66) 당시 고려는 箕子가 분봉된 ‘遼河以東’이 고려의 강역이라는 주장을 폈다[『高麗史』 권 114, 列傳27 池龍壽 “本國與堯並立 周武王封箕子于朝鮮 而賜之履西至于遼河 (중략) 凡遼河以東本國疆內之民大小頭目等 速自來朝 共享爵祿”].

67) 『世宗實錄』 地理志 咸吉道 慶源都護府 “自巨陽西距六十里 先春峴 卽尹瓘立碑處 其碑四面有書 爲胡人剝去其字 後有人掘其根 有高麗之境四字”

위의 기사는 慶源都護府 항목에서 관내 東林城에서 先春峴까지의 여정을 정리한 기사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선춘현이 윤관이 입비한 곳이라는 해석과 함께 이곳에 있던 비석의 밑동에서 “高麗之境”이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傳聞을 채록한 것이어서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세종 21년(1439) 세종이 金宗瑞에게 지시한 내용 중에 이 비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東北의 지경은 공협진을 경계로 한다는 傳言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알지 못한다. 본국의 땅을 고찰해 보면 本鎮이 長白山 북쪽 기슭에 있는데, 역시 虛實을 알 수 없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협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고 했는데, 지금 듣자니 先春峴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고 한다. 본진은 선춘점의 어느 방면에 있는가? 그 비문을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 비를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길이 험해 사람을 보내기 어렵다면 폐단 없이 탐지할 방법을 경이 마땅히 잘 생각하여 보고하라.⁶⁸⁾

위의 기사를 보면 우선 동북 9성 개척에서 공협진이 경계였다는 ‘傳言’이 있었고, 이것이 당시 입비 사적과 함께 『고려사』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사』의 공협진 입비 기사가 고려의 원전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인식에서 생성된 전문을 채록한 것임을 보여준다.⁶⁹⁾ 아울러 先春峴(先春峴)이 立碑處라는 설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고려의 영토가 공협진을 경계로 했다는 설은 우왕 14년 명에 보낸 글에서 처음 피력되었다. 당시 글에는 입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만 공협진을 경계로 간주한 것은 비석이 있었다는 데서 유도된 것이므로 그 배경에는 입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춘현 및 윤관의 입비에 대한 내용은 『세

68) 『世宗實錄』 권86, 世宗 21년 8월 6일(壬午) “東北之境 以公嶮鎮爲界 傳言久矣 然未知的在何處 考之本國之地 本鎮在長白山北麓 亦未知虛實 高麗史云 尹瓘立碑于公嶮鎮以爲界 至今聞先春峴有尹瓘所立之碑 本鎮在先春峴之何面乎 其碑文 可以使人探見乎 其碑今何如也 如曰路阻未易使人 則無弊探知之策 卿當熟慮以聞”

69) 윤경진, 2016 앞의 논문, 174-175면.

종실록』 지리지에서 원래의 경원도호부 항목에 들어 있어 『팔도지리지』가 만들어진 세종 14년 당시에 이미 이 설이 채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종의 언급을 보면 비의 소재나 비문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비의 밑동에 “高麗之境”이라는 말이 있다는 부분은 결국 선춘현에 비가 있고 이것이 윤관이 세운 비라는 설의 근거를 위해 생성된 내용이다. 세종은 이러한 전문의 사실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공협진 내지 선춘현 입비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조선은 이 사적을 적극 수용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선춘현까지의 여정을 정리한 것에는 이러한 지향이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다. 여진의 쟁장 사건에 등장하는 알도리의 언급도 결국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700리’라는 구체적인 지점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공협진이 여진 초유와 연계하여 영유권을 내세우는 근거로 채용된 것임을 고려할 때, ‘700리’라는 내용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초유에 응한 斡都里⁷⁰⁾는 『용비어천가』의 설명에 따르면 海西江의 동쪽, 火兒阿의 서쪽에 있던 무리였다.⁷¹⁾ 해서강은 송화강을 말하며, 화아이는 송화강과 목단강이 만나는 지점의 동쪽을 나타낸다. 곧 알도리는 두 강이 만나는 권역에 위치하는 것이다. 두 강의 합류 지점은 현 헤이룽장성 이란[依蘭]현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元初에 다섯 萬戶府가 있었으나 이후 세 만호부만 남게 되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세 만호부를 斡朶里·火兒阿·托溫으로 열거했으며, 이 세姓을 그 지역에서는 ‘移蘭豆漫’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⁷²⁾ 알타리(알도리)는 元末明初에 남하하여⁷³⁾ 明代부터는 虜州女眞의 주 세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알도

70) 斡都里는 實錄에서는 斡朶里, 五都里, 吾都里, 烏道里 등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71) 『龍飛御天歌』 권7, 53장 “斡朶里地名 在海西江之東 火兒阿之西 火兒阿亦地名 在李岡合流之東”

72) 『龍飛御天歌』 권7, 제53장 “斡朶里火兒阿托溫三城 其俗謂之移蘭豆漫”

73) 태종 5년에 童猛哥帖木兒가 조선을 섬긴 것이 20여 년이라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고려 우왕 11년(1385)경 이전에 남하한 것으로 추측된다(『太宗實錄』 권9, 태종 5년 4월 乙酉 “猛哥帖木兒等云 我等順事朝鮮二十餘年矣”). 알타리의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金九鎮, 1973 『곰훈회의 斡朶里女眞에 대한 研究』 『史叢』 17·18합 참조.

리의 주장인 童猛哥帖木兒는 태종 11년(1411)에 吾音會(회령)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난다.⁷⁴⁾

그런데 쟁쟁 사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알도리는 윤관의 9성 개척 당시부터 이미 복속한 것으로 표방되었다. 이것은 초유 대상을 공핍진 경내로 규정한 2차 초유의 내용과 맥이 닿는다. 곧 여진에 대한 지배권은 알도리가 두만강으로 남하하기 전의 原住地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도리의 원주지인 이란두만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영유권을 소급 설정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지역이 '두만강 북쪽 700리'를 설정하는 준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고려의 영토의식을 그대로 계승한 조선은 이를 동북면 출신 이성계의 위세와 접목하였다. 전술한 쟁쟁 기사는 그 예이다. 그리고 『태조실록』의 태조 4년 기사에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東北面 한 道는 본래 왕업을 일으킨 땅이다. (태조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흠모한 것이 오래되었다. 야인의 주장이 멀리서 오니 移蘭豆漫이 모두 와서 복종하고 받들었다. 항상 弓劍을 차고 潛邸에 호위하며 좌우 가까이에서 시위하였다. 東西로 정벌할 때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⁷⁵⁾

위 기사 또한 이성계의 야인(여진)에 대한 위세를 담은 것인데, 먼 곳의 야인 주장이 귀부하는 것을 말하면서 移蘭豆漫의 복속을 언급하였다. 이란두만이 이성계의 위세가 미치는 범위가 되는 것이다.

이어 여진의 부류를 열거할 때 장성 이북의 합란, 홍공부터 갑주와 海洋(海陽), 그리고 이란두만까지 망라하였다. 다음에 태조 즉위 후 여진을 초유한 성과를 말하면서 이들이 國人과 결혼하고 세금을 바쳐 編戶와 다를 바 없고 조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⁷⁶⁾ 이는 해당 지역의 '영토화'를 전망

74)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4월 丙辰 “東北面吾音會童猛哥帖木兒 (중략) 鳳州卽開元 金於虛出所居”

75) 『太祖實錄』 권8, 太祖 4년 12월 14일(癸卯) “東北一道 本肇基之地也 畏威懷德久矣 野人酋長遠至 移蘭豆漫 皆來服事 常佩弓劍 入衛潛邸 昵侍左右 東征西伐 靡不從焉”

76) 『太祖實錄』 권8, 太祖 4년 12월 14일(癸卯) “上卽位 量授萬戶千戶之職 使李豆蘭招安女眞 被髮之俗 盡襲冠帶 改禽獸之行 習禮義之教 與國人相婚 服役納賦 無異於編戶 且恥役於酋

하는 표현이다.

다음에 조선이 군현 설치를 통해 주민을 編籍함으로써 두만강을 경계로 삼게 되었음을 말한 뒤,⁷⁷⁾ 두만강 밖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江外는 습속이 다른데 具州에 이르기까지 소식을 듣고 의리를 흠모하여 혹은 직접 來朝하고, 혹은 子弟를 보내고, 혹은 質子를 맡겨 시위를 따르고, 혹은 爵命을 받기를 청하고, 혹은 內地로 옮기고, 혹은 土物을 바치는 자가 길에 이어졌다.⁷⁸⁾

위 기사는 군현으로 편제되지 않은 두만강 밖의 여진도 조선에 귀부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 양상은 江内の 야인이 군현으로 편제되기 전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이 설명은 강외의 야인도 궁극적으로 조선의 지배에 들어올 것이라는 당위적 전망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뒤이어 강 근처에 사는 사람이 조선 사람과 소송을 벌인 것이나 태조가 선조의 능침을 참배할 때 江外의 야인들이 다투어 와서 알현했다는 서술에서 드러난다. 이성계의 위세가 미치는 범위는 곧 조선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동북 9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였다.

이 구도의 실제 내용은 역으로 구성된다. 곧 고려말 공협진을 매개로 동북 9성의 경계를 두만강 북쪽으로 올릴 때 알도리 등의 원주지인 이란두만이 그 지표로 수립되었고, 이것은 고려를 이은 조선의 영유권을 표상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이것을 그대로 이성계의 위세 범위로 설정한 것이다.⁷⁹⁾ 알도리의 내조와 윤관의 평정, 이성계의 위세가 담긴 쟁쟁 기사는 이 구도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사

長 皆願爲國民”

77) 이를 통해 해당 기사가 태조 4년이나 처음 『태조실록』을 편찬할 당시가 아니라 세종대에 增修할 때 들어간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78) 『太祖實錄』 권8, 太祖 4년 12월 14일(癸卯) “江外殊俗 至於具州 聞風慕義 或親來朝 或遣子弟 或委質隨侍 或請受爵命 或徙內地 或進土物者 接踵於道”

79) 위 기사에 보이는 具州(古州: 寧古塔)는 현 헤이룽장성 닝안[寧安]시로서 두만강과 이란현의 중간 지점에 있다. 여기서 조선초기 야인에 대한 인식과 지배 형태는 조선 영토로 편입된 두만강내와 직접 영향이 미치는 두만강 밖의 구주까지, 그리고 궁극적인 조선의 지배 범위로 설정되는 구주 이북의 이란두만 등 세 권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여진 정책과 영토의식에 대해서는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지기로 한다.

레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두만강 북쪽 선춘현을 입비처로 지목하고, 東林城에서 所多老와 巨陽城을 거쳐 선춘현에 이르는 여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선춘현에서 愁濱江을 넘어 옛 城基가 있다고 적시한 뒤 다시 소다로에서 沙吾里站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고 “그 북쪽 蘇下江가에 공협진이 있으니 곧 윤관이 설치한 鎭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선춘현과 공협진이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자리한 것으로 보고 각각에 이르는 여정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수빈강은 흑룡강(아무르강)을 말한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을 보면, 근원이 백두산에서 나와 북쪽으로 흘러 蘇下江이 되고 공협진과 선춘현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흘러 수빈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협진과 선춘령의 위치를 제시한 수빈강은 그 상류인 소하강을 가리키며, 이 경우 소하강은 목단강으로 판단할 수 있다.⁸⁰⁾ 『新增東國輿地勝覽』 會寧都護府조에는 백두산을 발원지로 하는 하천으로 압록강(西流), 松花江·混同江(北流), 蘇下江·速平江(東北流), 두만강(東流)을 열거하고 있어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목단강 양쪽에 선춘현과 공협진이 자리하게 된다.

이 구도가 수립될 수 있는 북쪽 한계는 송화강과 목단강 만나는 이란현이며, 그 이남의 일정 권역이 『용비어천가』에서 말한 이란두만이 된다. 이 권역에 공협진과 선춘현이 비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알도리의 원주지를 매개로 공협진을 설정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⁸¹⁾

남은 문제는 입비처로서 선춘현을 따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당초 입비처로 지목된 곳은 공협진이었다. 입비 사실을 채록해 넣은 『고려사』 기사에 선춘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곧 선춘현은 후대에 새롭게 입비처로 지목된 것인 바, 여기에는 이를 매개하는 이유나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80) 기존에 소하강을 목단강 중상류로 언급한 견해가 있어 참고된다[최규성, 2002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신편)한국사』 15, 328면]. 한편 池內宏은 두만강복설을 부정하면서 함께 소하강도 공상의 강으로 처리하였다(池內宏, 1919 『公嶮鎭と蘇下江』 『東洋學報』 9).

81) 실상 '700리'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제시한 여정의 里數를 모두 합쳐도 700리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700리'는 조선에서 이란두만 지역에 있는 선춘현에 대해 그 거리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현재로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협진 입비’에 대한 인식이 수립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비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마운령비가 고구려 古碑로 간주된 것처럼 두만강 북쪽의 개척 경험을 입증하려면 고비와 같은 실물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추정컨대 이란두만의 선춘현 지역에 고비의 존재가 전해지면서⁸²⁾ 이곳에 입비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강 건너 성터를 공협진으로 지목한 것이 아닐까 한다.⁸³⁾

선춘현 입비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비의 四面에 글자가 있었는데 胡人이 그 글자를 깎아버렸다. 뒤에 사람이 그 밑을 파보니 ‘高麗之境’ 네 글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四面碑에 대한 언급은 실제 비의 존재를 매개로 제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⁸⁴⁾ 글자가 박락되어 판독할 수 없는 것을 호인이 깎았다고 처리하고, 밑에 새겨진 ‘고려지경’이라는 내용을 첨가하여 영유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종은 이러한 전문에 따라 비의 소재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영유권의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용비어천가』 찬술과 함께 이성계의 위세로 포장되어 실록 등에 담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고려는 공민왕대 이후 북방 개척을 전개하며 동북 9성의 경험을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공협진이 북방 경계였다는 인식이 수립되었

82) 이는 고려말 이래 조선에 내부한 알도리나 올랑함에 의해 전해졌을 것이다. 爭長 기사에서 이들이 ‘윤관비’를 언급한 것은 이를 매개로 구성된 내용인 것이다.

83)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을 보면, 먼저 東林城에서 先春峴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고, 이어 강 건너 성터를 공협진으로 지목한 뒤 그 여정을 정리하였다. 이는 입비처로서 선춘현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공협진의 위치를 가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선춘현의 현재 위치에 대한 견해로는 노송령(金九鎭, 1976 『公嶮鎭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연결의 北山[최규성, 2002 『先春嶺과 公嶮鎭碑에 대한 新考察』, 『韓國史論(국사편찬위원회)』 34], 백초구령(이상태, 2016 『선춘령과 공협진의 위치 고찰에 관한 연구』, 『學林』 37) 등이 있다.

84) 윤무병은 고려가 공협진을 경계로 했다는 傳言과 두만강 북쪽 여진 거주지의 선춘현에 윤관이 세운 비가 남아있다는 所傳에 의거해 『八道地理志』에서 선춘현과 공협진을 결부시킨 것으로 보았다(尹武炳, 1958 『吉州城과 公嶮鎭』, 『歷史學報』 10, 82-88면). 필자는 고비의 존재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그것이 윤관의 비라는 전승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고려말에 비로소 생성되었다고 본다.

다. 고려는 영토 개척의 토대로 여진 부락의 초유를 도모하였고, 그 결과로 알도리와 올랑합이 가장 먼저 귀부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윤관의 정벌 때 이미 복속되었다는 연고를 표방하였고, 이 인식에 의해 공협진의 위치는 알도리의 원주지를 지표로 삼아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⁸⁵⁾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말 동북면에서 진행된 영토개척의 추이와 이에 연동된 영토의 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개척은 동북 9성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공협진이 9성의 경계로 인식되며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설이 등장하였다. 본고는 이 설이 어떤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는지 추적한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는 공민왕 5년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장성 이북으로 개척을 진행하였다. 이에 장성 이남과 이북 두 지역을 각각 쌍성과 삼살(북청)을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이 모두 조위의 반란으로 몰입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는 쌍성 수복과 같은 맥락에서 장성 이북 영토 확장의 명분을 확보하였다. 이는 동북 9성의 개척 경험이 아직 영유권의 지표로 활용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쌍성 수복 당시 고려가 영유권을 표방한 범위의 경계는 이판령(마천령)이었다. 이는 당시 고려가 확보한 지역이 이판령, 곧 단주(단천) 일대까지였기 때문이다. 고려는 합란(함흥)과 삼살을 차례로 접수하고 조소생 등을 이판령 이북으로 밀어냄으로써 단주 일대까지 영토로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는 伊板의 좁은 입구에 관방을 설치하여 통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는 외적 방어와 더불어 고려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85)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외에도 두만강 주변의 사적을 고려의 9성 개척과 연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선춘현 동쪽 60리에 있는 巨陽城을 윤관이 쌓은 것이라고 하거나 경원도호부 동남쪽의 倉基에 대해 前朝에서 北伐할 때 식량을 수송하던 곳이라는 謠傳을 수록한 것은 그 예이다.

고려가 장성을 넘어 영토를 개척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 경험에 대한 인식도 환기되었다. 공민왕 11년 李壽山이 여진의 강역을 정한 것이나 공민왕 후반 羅興儒가 지도를 편찬하며 중국과 본국을 아우르고 강역의 離合을 서술한 것은 그 반영이다. 여기에는 故土에 대한 인식과 영토 수복의 자부심이 투영되었다.

고려는 일차로 이관령을 경계로 하면서도 길주 방면에 대한 영토의식도 유지하였다. 충숙왕 때 조돈이 쌍성 이북 지역의 고려 주민을 추쇄할 때 해양(길주)이 그 상한이 된 것이나 그에 앞서 충렬왕 16년 합단의 침입에 대한 첫 보고에서 해양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가 지속적으로 해양 방면까지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민왕 7년에는 해양의 토호 完者不花가 내투했는데, 이를 계기로 고려는 해양에 대한 경략을 도모하였다. 당시 조소생은 納哈出을 끌어들이어 이관령 이남을 침구했는데, 고려는 이에 맞서 해양에 대한 압박을 높여갔다. 그 결과로 공민왕 20년 전후로 해양만호 弓大와 진변원수 達麻大 등이 고려에 내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발판으로 점차 직접 지배를 구현해 나갔다. 우왕 8년에는 해양만호 金同不花가 아들을 질자로 보낸 데 이어 자신이 관할하던 주민과 함께 내투하였다. 고려는 이 방면에 침입한 외적을 직접 군대를 보내 격퇴하기도 하였다.

우왕 9년 이성계가 올린 安邊策에서 여진이 갑주·해양 등의 백성을 유인해 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은 해양까지 고려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해양은 공양왕 2년에 만호부가 설치되면서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고려는 길주까지 포괄하는 영토의식을 강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북 9성의 경험이 영유권의 지표로 부각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동북 9성에 근거한 영토의식은 공협진을 지표로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우왕 14년 명의 鐵嶺衛 설치 통보를 계기로 적극 표방되었다. 원을 밀어내고 요동 경략을 본격화하던 명은 철령 이북이 원래 원에 속했다는 이유로 요동에 귀속시킨다는 지침을 고려에 전하였다. 여기서 남방 경계로 제시되는 '철령'은 문주(문천)와 의주(덕원) 사이에 있는 鐵關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쌍성총관부의 남방 경계였던 곳이다.

고려는 철령위 설치의 취소를 요청하면서 문주에서 함주를 거쳐 공협진까지

본래 고려의 땅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동북 9성의 개척을 역사적 증거로 내세우며 공협진을 북쪽 경계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처음 6성을 건설한 뒤 “공협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는 『고려사』 기사와 연결되는 것으로, 고려말의 영토 의식을 반영한다.

쌍성총관부 설치 후 그 관할에 들어간 장성 이남과 이북은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쌍성 수복 후 장성 이북까지 진출하는 근거를 제공했지만, 철령위 설치로 고려의 주진이 있던 장성 이남까지 상실하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이에 고려는 장성 이북도 고려의 땅이었다는 역사적 근거로서 동북 9성의 경협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 때 길주 이남에 있던 공협진이 북방 경계로 제시되었다. 당초 고구려의 古碑로 지목된 것을 윤관이 경계 표시로 세운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비의 소재지인 공협진이 북방 경계로 간주된 것이다. 그런데 공협진은 도중에 폐지되어 그 연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영토 범위를 탄력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물로 인지된 ‘윤관비(마운령비)’와 관념적인 ‘공협진비’가 분리되었다.

공협진 위치의 복상은 조선초기 동북면의 영토 개척에서 확인된다. 공협진은 처음에 경원도호부 연혁에 들어갔다. 이는 조선이 두만강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공협진이 두만강 북쪽 70리에 있다는 설도 채록되었다. 이는 조선이 두만강 북쪽까지 개척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결국 공협진 사적은 명의 철령위 설치에 대응하여 고려의 영토 범위를 제시하면서 전면화되었고, 조선 또한 동북면을 개척하면서 영유권의 범위를 공협진까지로 잡았다. 공협진의 위치를 ‘두만강 북쪽 70리’라고 특정한 데에는 고려말부터 진행된 여진 招諭가 직접적인 매개가 되었다.

고려는 길주 방면을 경략하면서 두만강변의 여진에 대한 초유를 적극적으로 피하였다. 공양왕 3년 兀良哈과 翰都里 등 여진 부락이 고려에 내조하였다. 이듬해 발생한 울랑합과 알도리의 爭長 사건 기사에는 윤관이 알도리 땅을 평정하고 비를 세워 “高麗地(之)境”이라 했다는 알도리의 언급이 인용되어 있다.

그런데 부락 단위로 흩어져 살던 알도리가 수백 년 전의 사적을 언급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 기사는 『태조실록』 총서 및 『용비어천가』에도 실려 있다. 『용비어천가』 편찬 후 그 내용을 넣기 위해 『태조실록』을 개수하였다. 쟁장 기사는 그 하나로서 이성계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고려말 알도리 등의 내조를 매개로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 내조의 정당화를 위해 윤관의 사적을 이용하여 이들의 거주 지역이 본래 고려의 땅이라는 의식을 투영하였다. 이 내용은 뒤에 편찬된 『고려사』에도 들어갔다.

이 때 비문 내용은 傳聞을 채록한 것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소개되어 있다. 세종 21년 세종은 김중서에게 공험진 입비 사적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공험진을 경계로 한다는 傳言이 오래되었으나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고려사』의 입비 기사 또한 고려의 원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전문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우왕 14년 철령위 설치를 계기로 표출된 공험진 인식은 여진 초유와 맞물리면서 두만강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비문의 “高麗之境”도 선춘현에 비가 있고 이것이 윤관이 세운 비라는 설의 근거를 위해 생성된 내용이다. 『세종실록』 지리지가 이 설을 적극 수용하면서 선춘현에 이르는 경로까지 정리한 것은 조선에게 영유권이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고려는 알도리·올랑합 초유를 바탕으로 그 외곽의 여진 부락까지 초유를 도모했는데, 그 근거는 이들이 “본국의 공험진 경내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유의 성과, 혹은 최종 목표점이 바로 공험진의 위치가 되는데, 이 곳이 두만강 북쪽 70리로 계산된 것이다. 이곳은 두만강으로 남하하기 전 알도리의 근거지였던 移蘭豆漫을 통해 유도되었다.

『태조실록』의 태조 4년 기사에는 여진 지역에 대한 조선의 지배 과정이 이성계의 위세를 매개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이성계의 위세가 미친 범위로 이란두만이 지목되었다. 먼저 두만강 안쪽의 여진이 조선의 군현으로 전환되었고, 두만강에서 具州까지의 여진은 조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란두만까지 궁극적으로 조선의 지배로 들어와야 하는 곳으로 설정되었다.

이것을 규정하는 현실적 요소는 이성계의 위세였고, 그 범위는 알도리의 원주지까지였다. 그리고 이것을 동북 9성의 사적을 통해 역사적으로 입증하였다. 그

결과 경계 지점인 이란두만을 준거로 공험진을 비정함으로써 두만강북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입비 사적을 해당 지역의 선춘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古碑와 연계하면서 선춘현 입비라는 사적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주제어 : 東北面, 東北九城, 公嶮鎭, 鐵嶺衛, 幹都里

투고일(2019. 10. 30), 심사시작일(2019. 11. 17), 심사완료일(2019. 12. 2)

〈Abstract〉

Territorial Expansion in the Northeast Frontier(東北面)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Goryeo's Recognition of Its own Territory - How the "Gongheom-jin(公嶮鎭) was above the Duman-gang river line" Notion was formed -

Yoon, Kyeong Jin *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ow expansion of territory progressed in the Northeast Realm("東北面, Dongbuk-myeon") of Goryeo at the end of the dynasty, and how the Goryeo people's recognition of their own territory enlarged accordingly. Alongside the examination of this issue, their recollection of the so-called "Northeast Nine Fortresses (東北九城)" is also observed, in order to determine exactly when the notion of considering the location of Gongheom-jin(公嶮鎭) to have been 700 ri units above the Duman-gang river line actually began to develop.

The Goryeo people considered the location of the '9 fortresses in the Northeast' as part of their territory, and established Gongheom-jin as the borderline. They also believed an old stone tablet which had been considered to have belonged to the Goguryeo era as a tablet that was more recently erected by Yun Gwan(尹瓘) in order to mark the borderline. Later, Gongheom-jin served as a basis for Goryeo's defense against Ming's threats to establish Cheolryeong-wi(鐵嶺衛) in the region, and as territory expansion continued, its own location also continued to move northward.

Meanwhile, Goryeo, while enlarging its territory, also dealt with the Jurchen tribes. The Aldori(斡都里) faction which was living in the Songhwa-gang river basin relocated to the Duman-gang area and surrendered to Goryeo. Goryeo and Joseon both considered their original habitat as part of their own territories. And as Gongheom-jin and Yun Gwan's tablet continued to be cited as foundations of territorial defense and preserv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notion that Gongheom-jin had really always been above the Duman-gang river line began to take shape.

Key Words : Northeast Realm(東北面), Northeast Nine Fortresses(東北九城), Gongheom-jin(公嶮鎭), Cheolryeong-wi(鐵嶺衛), Aldori(幹都里)